

서울특별시립 강서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의안 번호	1386
----------	------

2013년 7월 12일  
보건복지위원회

**1. 심사경과**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년 6월 14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13년 6월 19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(2013년 7월 1일 상정·의결)

**2. 제안설명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)**

- 서울특별시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서남권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신규설치,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로
-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 인터넷·스마트폰 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·교육, 중독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, 부모상담, 캠페인등이며,
- 위탁기간은 2년 10월(2013. 9. 1 ~ 2016.6.30)임.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양재대)

#### 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(이하 “상담센터”라 함)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에 의거해 서울시의 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상기 상담센터는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·치료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, 현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담센터는 서울시에 권역별로 총 5개소(광진, 보라매, 창동, 명지, 강북)가 설치·운영 중이며, 이번에 서남권 지역에 상기 상담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.

#### 〈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설치·운영 현황〉

(단위 : 천원)

시설명	소재지	운영법인	개원일	전용공간	종사자수	'13시보조금
광진	광진구 광장동 318 광진청소년수련관 내	사)홍사단	'07. 7.25	234m <sup>2</sup>	10명	540,000
보라매	동작구 신대방동 395 보라매청소년수련관	재)서울가톨릭청소년회	'09. 4.21	203m <sup>2</sup>	10명	540,000
창동	도봉구 창동 1-6 창동청소년수련관	학)광운학원	'10. 7. 1	278m <sup>2</sup>	10명	540,000
명지	서대문구 홍은2동 356-1 명지전문대학	학)명지학원	'10. 8.30	250m <sup>2</sup>	10명	540,000
강북	강북구 수유동 31-19 송림빌딩(5층및6층일부)	학)광운학원	'12. 6. 1	212m <sup>2</sup>	10명	540,000

- 시장이 상기 시설에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

- 인터넷중독 상담·치료사업
- 인터넷중독예방·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
- 인터넷중독 예방 SW 개발·보급 및 정책연구사업
- 기타 인터넷중독 예방·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#### 나.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나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.
- 그런데, 상기 상담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관련 상담·치료 사업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,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.

#### 다.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

-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 등 다양할 수 있으나,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휴면서비스의 경우 그 특성상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민간위탁의 일차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임.
- 이에 상기 상담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

질의 향상, 전문성의 제고,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뚜렷한지 여부가 핵심 요소라 할 것임.

- 이런점에서보면 상기 상담센터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위기 아동·청소년에게, 예방에서부터 이후 전문적인 개입치료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해당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.
- 따라서 상기 상담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짐.
- 다만, 상기 센터에서 추진하려는 위탁 업무의 상당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 및 기타 아동·청소년 관련 시설 등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에 기반했을 때 보다 통합적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, 이들 유관기관간 연계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실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립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38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년 6월 1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호에 의하여 강서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추가 설치·운영함에 있어,
- 나. 청소년사업추진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,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립강서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99-7
- 시설규모 : 대지 355.4㎡, 건물 284.88㎡(본채 184㎡, 별채 104㎡)
- 개소일자 : 2013. 10.(예정)
- 이용대상 : 청소년, 학부모
- 운영방법 : 공개모집, 민간위탁

## 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2년 10월(2013.09.01 ~ 2016.06.30)
- 위탁업무
  -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
  - 인터넷중독 상담·치료사업
  - 인터넷중독예방·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
  - 인터넷중독 예방 SW 개발·보급 및 정책연구사업
  - 기타 인터넷중독 예방·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## 다. 소요예산(연도별)

- 2013년 : 350,000천원
- 2014년 : 540,000천원
- 2015년 : 570,000천원

※ 2013년도 예산은 센터 설치비 150,000천원, 인건비 및 운영비 200,000천원이고, 2014년 이후 예산은 소요 예상 인건비·운영비·사업비임.

## 라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- 청소년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 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- 민간위탁 추진현황 : 2013년 6월 현재 5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(광진, 보라매, 명지, 창동, 강북) 민간위탁 운영중

## 마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市 직영시 사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분의 예산 증가와 별도 공적 시설 관리·운영에 따른 부가적 비용발생으로 재정부담 예상
- 또한,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기존의 5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모두 민간위탁(청소년법인 3, 학교법인 2)으로 운영되고 있음.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청소년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  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### 나. 기타사항

- 없음.